

「2017회계년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본 승인안은 2018년 7월 2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18년 10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임.

1. 제안이유

2017회계년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지방공기업법 제35조(결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결산서의 제출등)에 따라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세입·세출결산 총괄

(단위:천원)

회계별	예산액 (A)	수납액 (B)	B/A (%)	지출액 (C)	C/A (%)	차기이월액 (D)	D/A (%)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35,581,351	39,856,783	112.0	30,054,650	84.5	9,802,133	27.5

○ 세입결산

(단위:천원)

구분	예산액 (A)	징수 결정액 (B)	B/A (%)	수납액 (C)	C/A (%)	미수 납액 (D)	D/A (%)	결손 처분액
합계	35,581,351	40,169,430	112.9	39,856,783	112.0	312,648	0.9	-
현년도	21,941,697	25,005,738	114.0	24,766,859	112.9	238,880	1.1	-
전기미수금	50,000	1,574,038	3,148.1	1,500,270	3,000.5	73,768	147.5	-
전기이월액	13,589,654	13,589,654	100.0	13,589,654	100.0	-	-	-

○ 세출결산

(단위:천원)

회 계 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지출액 (C)	이월액		불용액 (E)	비율	
				C/B (%)	(D)		D/B (%)	E/B (%)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35,581,351	35,581,351	30,054,650	84.5	9,802,133	27.5	1,669,886	4.7

○ 잉여금 처리상황

(단위:천원)

회계별	구분 계	건설개량 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순세계잉여금

3. 결산개요

□ 세입·세출결산 총괄

(단위:천원)

구 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잉여금	비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35,581,351	39,856,783	30,054,650	9,802,133	

○ 2017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5,581,351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9,856,783천원, 세출결산액은 30,054,650천원이고, 잉여금은 9,802,133천원임.

□ 세입결산

(단위: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비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35,581,351	40,169,430	39,856,783	312,648	

- 세입결산액은 39,856,783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112.0%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9.2%이며, 미수납액은 312,648천원임.

□ **세출결산**

(단위: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35,581,351	30,054,650	9,802,133	1,669,886	

- 세출결산액은 30,054,650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4.5%를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9,802,133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7.5%이며 불용액(집행잔액)은 1,669,886천원이 발생하였음.

4. 검토결과

□ **2017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예산결산총괄**

- 수입예산 결산액은 40,169백만원으로
수익적 수입 7,488백만원, 자본적수입 19,091백만원,
이월재원 13,590백만원임.
- 지출예산 결산액은 30,055백만원으로
수익적 지출 5,391백만원, 자본적 지출 12,191백만원
이월예산 지출 12,473백만원임.
- 자금결산 결과는
전기이월액 14,850백만원, 수입 25,007백만원
지출 30,055백만원, 차기이월액 9,802백만원임.

□ 재무상태표를 살펴보면

○ 자산총계는 236,387백만원으로

전기대비 5.9%인 13,232백만원이 증가 하였음.

유동자산은 전기대비 5,322백만원이 감소한 10,519백만원이고

비유동자산은 전기대비 18,555백만원이 증가한 225,869백만원으로

상수관망 선진화사업, 대관령식수전용댐공사, 방림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등의 건설중인 자산의 구축물 증가가 주요 원인임.

○ 부채총계는 전기대비 79백만원이 증가한 84백만원임.

○ 자본총계는 236,304백만원으로 전기대비 13,149백만원이 증가하였음.

국·도비 보조금, 타회계보조금, 공사부담금 증가가 주요 원인임.

□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 총수익은 7,528백만원으로

영업수익은 전기대비 1.5%감소한 6,321백만원이고

영업외수익은 전기대비 145.0% 증가한 1,207백만원임.

○ 총비용은 12,220백만원으로

매출원가는 전기대비 973백만원이 증가한 8,147백만원

판매비와 관리비는 전기대비 316백만원이 증가한 4,073백만원임.

○ 4,692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급수수익 및 총괄원가를 살펴보면

적 요	금액(천원)	연간조정량(m ³)	m ³ 당요금(원)
급수수익(상수도요금수입)	5,797,619	3,953,215	1,466.56
총괄원가	19,102,979	3,953,215	4,832.26
톤당손실			3,365.70
요금현실화율(%)			30.35
요금인상요인(%)			229.50

- 연간조정량은 3,953,215톤이고, 상수도요금수입은 5,797,619천원으로
톤당 요금은 1,466.56원임
- 수돗물 생산의 총괄원가는 19,102,979천원이며,
톤당 원가는 4,832.26원으로, 결함액은 13,305,360천원이며
229.50%의 요금인상요인이 발생하였음.
- 유수율은
연간생산량은 5,152,613톤이며,
연간조정량은 3,953,215톤으로 76.72%로 전기 대비
4.54%가 감소하였음.

□ 종합검토의견

- 우리군은 상수도공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넓은 면적과 산간 농촌
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수돗물 생산원가가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 공기업 경영면에서 불리한 여건임.
- 2017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보면 일반운영비, 약품·재료비 등의 영업
비용 절감과 수용가 미수금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전기에
비해 당기순손실은 증가하였음.

이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의 노후화로 인한 물리적, 경제적
가치의 하락으로 발생한 감가상각비가 영업비용의 57.23%를 차지
하고 있고, 인력운영비, 동력비, 수선교체비등의 증가가 당기순손실
증가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또한,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던 유수율이 당기에는 소폭 감소하였음. 이는 동계올림픽시설 준공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수요량 증가와 맞물려 연간 생산량 증가폭에 비해 조정량 증가율이 이에 미치지 못하여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사료됨.
- 「지방공기업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작성된 회계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을 보면 특별회계의 재무제표는 평창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2017년 12월 31일과 2016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현금흐름을 한국의 일반기업회계기준, 지방공기업법,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결산지침 및 평창군상하수도 사업회계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음.
- 따라서, 2017년 평창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관련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35조(결산) ①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모든 장부를 마감하여 결산을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지방직영기업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해당 연도의 사업보고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와 그 밖의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36조(결산서의 제출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자금운용계산서 또는 현금흐름표
5. 회전기금을 둔 경우에는 그 운용상황서
6. 결산부속명세서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결산부속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1. 수익비용명세서
2. 비유동자산 명세서
3. 채고자산명세서
4. 지방채명세서

5. 예산전용조서
6. 예비비사용조서
7. 예산이월액조서
8. 계속비집행조서
9. 계속비정산보고서(계속비에 관련된 계속연도 또는 그 이월된 연도가 끝난 경우에 한한다)
10. 채무부담행위집행조서
11. 전년도이월액사용조서
12. 미수액조서
13. 미지급액조서
14. 불납결손액조서
15. 세입·세출외 현금현재액조서
16. 성질별 세출결산명세서
17. 기타 필요한 명세서